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
2021. 12. 1.(수) 10:00

제23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[행정문화국 교육지원과]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158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1. 11. 10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11. 10.

2. 제안이유

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 간 격차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취지에 따라 기존 중·고등학교 신입생의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정의 및 지원 대상에 초등학교, 초등학생 추가(안 제2조제1호, 제3조)
- 나. 입학준비금 지원 내용 구체화(안 제2조제3호)
- 다. 입학준비금의 환수 사유 추가(안 제7조제4호 신설)
- 라. 제출서류 서식 수정(안 별지 서식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교육기본법」 제4조, 제27조
- 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예산 편성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이유

- 본 조례안은 구청장협의회 ‘초등학생 입학준비금’ 공동추진에 따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구청장이 발의한 안건임.

나. 주요 내용

- 안 제2조제1호와 제3조는 정의 및 지원대상 초등학생 추가
- 안 제2조제3호는 입학준비금 지원내용 구체화
- 안 제7조제4호는 입학준비금의 환수 사유 추가

다. 검토결과

- 본 개정안은 2021년부터 중·고 입학생에게는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초등학교는 미지급되고 있어 상대적 차별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었음
-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서울특별시, 25개 자치구가 합의하여 추진하는 교육복지사업으로서 2022년부터 지원 대상 범위를 초등학교 입학생에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천하고자 함
- 다만 중복지원 등 지원 대상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

관계 법령

교육기본법

제4조(교육의 기회균등) ① 모든 국민은 성별, 종교, 신념, 인종, 사회적 신분,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제27조(보건 및 복지의 증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